

□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

기관생명윤리위원회(이하 "기관위원회")를 설치한 기관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그 기관위원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(법 제10조제4항, 시행령 제24제제1항).

기관위원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기관위원회등록신청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등록신청 및 등록증 발급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(시행규칙 제6조제4항).

▷ 등록신청 방법

◆ 온라인 등록 신청(정보시스템을 통한 등록신청)

1) 등록신청: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(is.cdc.go.kr)에 회원가입 후 등록신청

※ 온라인상 신청서 작성 시 필요서류

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 또는 사업자등록증(법인이 아닌 경우)
- 기관위원회 운영지원인력 현황
- 기관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
- 협약으로 위탁 운영할 경우, 협약서(별지 제3호 서식)사본
- 통합 운영하는 경우, 통합 운영하려는 기관위원회 유형, 통합 운영의 목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

2) 안내·연계 홈페이지: 기관위원회 관련 정보 및 등록 신청방법 등 참고

-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(irb.or.kr)

등록 신청 관련 문의: 043)249-3078